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의결권 제한명령 미이행 시 주식처분 명령 〉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67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의결권 제한명령 미이행 시 주식처분 명령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1. 20.
3. 회 부 일 : 2026. 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최대주주의 법령위반 등으로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인 최대주주가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은행법, 저축은행법과 달리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 및 제42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른 의결권 행사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대상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최대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보유한 해당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말한다) 중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⑦ (생략)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39조(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	제39조(이행강제금) ① ----- -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6항--

현행	개정안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제32조제6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위반한 자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32조는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는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 부적격한 최대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음(2015. 7. 31. 제정, 2016. 8. 1. 시행).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¹⁾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금

융위원회가 2년마다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에 필요한 조치 등의 이행을 명할 수 있음.

- 적격성 유지요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법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요건임.

또한, 현행법 제3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음.

1) 은행,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④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법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라.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 마.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해당 기업을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 이와 관련하여, 의결권 행사 제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적격성 심사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대한 최대주주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개정안은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른 의결권 행사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완비성,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이미 주식처분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와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음.

○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은행법」³⁾ 및 「상호저축은행법」⁴⁾에

3) 「은행법」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 3. 29.>

1. 제15조제1항·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그 완료 전까지는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5조제1항·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 대주주 등이 자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결권 행사 제한, 요건충족 명령을 할 수 있고, 요건충족 명령을 미이행할

- 1) 제15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 2) 제15조제1항·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이내에서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6. 3. 29.>
 -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3. 29.>
- 4) 「상호저축은행법」
-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득등”이라 한다)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 중 금융사고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금융사고방지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금융사고방지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면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의 취득등을 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등을 한 주식(제2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을 한 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⑧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⑨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승인, 승인신청, 자료나 정보의 제공요구 및 명령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3. 22.]

경우 주식처분 명령을 할 수 있음(「은행법」상 주식처분명령 규정은 1998. 2. 24. 신설, 「상호저축은행법」상 주식처분명령 규정은 2010. 3. 22. 신설)⁵⁾.

< 개별법상 주식처분 명령제도 비교 >

구분	적격성 심사	요건충족 명령	의결권 제한	주식처분 명령	이행 강제금	형벌
은행법	○	○	○	○	○	X
상호 저축은행법	○	○	○	○	○	○
금융사 지배구조법	○	○	○	X	X	X

* 자료: 금융위원회

□ 다만, 주식처분명령 도입에 관해서는 제20대국회(2018년)⁶⁾ 및 제21대 국회(2023년)⁷⁾에서 관련 법률안이 제안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고, 당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외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업권별 특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업계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 한편, 개정안은 주식처분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호저축은행법」에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⁸⁾, 「은행법」에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5) 은행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금취급기관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과거 대규모 부실사태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됨.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8.9.14. 정부 제출)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11.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8)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벌칙)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않음. 은행, 상호저축은행과 달리 업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 오던 기타 업권에 대하여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서 은행의 경우보다 제재를 강화하여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특히, 지금까지 의결권 행사 제한 명령을 한 사례나 이를 위반한 사례가 아직 없는 상황이므로 제재를 강화할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04

처한다.

5. 제10조의6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참고자료】 업권별 주기적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비교

구분	최대주주 자격심사 (지배구조법)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심사 (상호저축은행법)
대상 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종 금사, 카드사, 비은행지주 *투자자문·알임업자, 전문사모조합투자업자 온라인소매투자중개업자 제외	은행 및 은행지주	상호저축은행
심사 대상자	최대주주중 개인 최대출자자	10% 초과 보유 주주 등 (법인인 경우 법인을 심사)	최대주주, 주요주주 등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출자자 및 대표자를 심사)
심사주기	2년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수시)	반기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수시)	2년 (동일계열 자산2조원 이상 저축은행 : 매년)
심사요건	①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공 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 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을 받은 사실 여부 ② 부실금융기관 지정되었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 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여 부 ③ 최근 5년간 은행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최근 3년간 여부 채무미변제 등록 사실 여부 등	①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 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 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 실 여부 ② 부실금융기관 지정되었 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여부 등	①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 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 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 실 여부 ②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 사실 여부 ③ 부실금융기관 지정되었 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여부 등
심사요건 미충족시	경영건전성 확보조치 이행 명령 (적격성 요건 충족 조치 부적격 사유 공시 명령 등)	초과보유 요건 등 충족 명령	대주주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
의결권 제한	<의결권 제한 명령> -(요건) 대주주의 부적격 사유가 중대 한 경우, * 금기 이상 실태를 신고받고 확정된 경우 등 -(대상주식)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 (최대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 보유 주식)한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명 령 가능(5년 범위내)	<의결권 행사 금지> -(요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 과보유요건등 충족명령을 받 은 경우 -(대상주식) 한도초과보유주 주가 초과 보유한 주식	<의결권 행사 금지> -(요건) 대주주가 적격성 유 지요건 충족명령을 받은 경우 -(대상주식) 대주주가 10% 이 상 보유한 주식
주식 처분명령	<현행> 없음	-(요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 과보유요건등 충족명령을 미이 행한 경우 -(효과) 6개월 이내 기간으로 초 과 보유주식에 대해 처분명 령 가능	-(요건) 대주주가 적격성 유 지요건 충족명령을 미이행 한 경우 -(효과) 6개월 이내 기간으로 10% 이상 해당 주식에 대해 처분 명령 가능

* 자료: 금융위원회